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황희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, 공연 관람, 박물관·미술관 입장, 신문 구독 등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(이하 “문화비 소득공제”라 함)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「문화기본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문화예술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7585호, 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됨.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원활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 신설).

3. 주요내용

- 가.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함(안 제38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)
- 나.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·등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
도록 함(안 제28조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. 2. ~ 5. 12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(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(이하 이 조에서 “문화비 소득공제”라 한다)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.

1.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·등록 및 관리
2.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·등록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
3.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등의 자료 제공
4.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, 홍보 및 관련 조사·분석 수행
5. 그 밖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

의 접수·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8조(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(이하 이 조에서 “문화비 소득공제”라 한다)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.</u> <u>1.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·등록 및 관리</u> <u>2.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·등록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</u> <u>3.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등의 자료 제공</u> <u>4.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, 홍보 및 관련 조사·분석 수행</u>

5. 그 밖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·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512